

01

의류의 품목분류 의류는 관세율표에서 어떻게 분류되는가?

육수진 사무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임교수

의류는 수입량이 많으며, FTA 활용률도 높은 품목이므로 의류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FTA 원산지확인 등을 위해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율표에서 제61류와 제62류에 분류되는 의류는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수출입 기업에서 품목분류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즉, 원단의 직조방식, 의류의 종류, 남성용 또는 여성용 여부, 섬유 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 등에 따라 류, 호, 소호 등 품목분류가 상이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FTA 원산지기준도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관련 업계 등에서 의류의 품목분류를 보다 잘 이해하고, 통관시에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세율표에서 의류의 품목분류 체계와 규정,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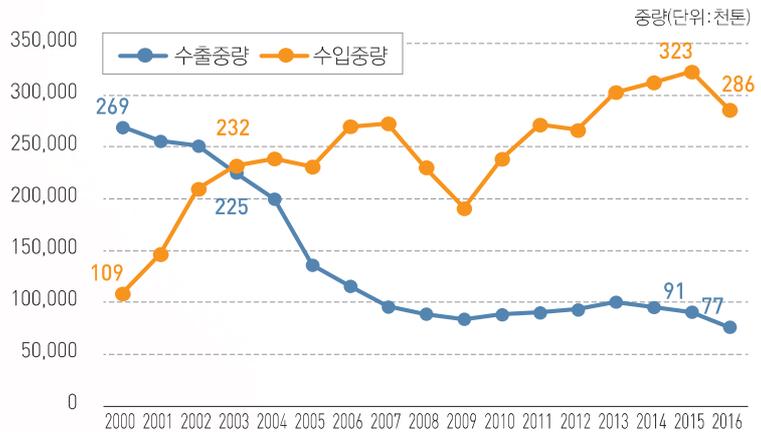
머리말

“한국 2~3년내 의류수입국 전략-한국 의류산업협 전망”

1996년 3월 24일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90년대 말까지 세계 5위권의 의류 수출국이었으나, 수출은 연평균 9.76%씩 감소하고 수입은 56.6%씩 증가하고 있어 수 년 내에 수입 초과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류 수출입통계를 분석해보면 이 기사에서 예상한 시기보다는 조금 늦어진 2003년부터 의류 수입량이 수출량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이다. 수출입 금액 기준으로는 2015년도 의류의 무역수지는 약 61억2천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①

〈그림1〉 의류(제61류+제62류)의 수출입통계 ②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의류는 FTA 체결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비율도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① 2015년도 수출금액 19억4천만불(미화), 수입금액 80억 6천만불(미화임).

②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 무역통계자료 참조 (2016년 통계: 2016.1월~2016.10월)

실제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 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의류의 FTA 활용률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③

이처럼 의류의 수입량과 FTA 활용률이 증가할수록 의류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결정과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확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결국 관세율, 원산지 등의 결정기준인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의류의 수입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율표에서 의류는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수출입 기업에서 품목분류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즉,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원단의 직조방식, 의류의 종류, 남성용 또는 여성용 여부, 섬유재료의 종류와 구성비율 등에 따라 류, 호, 소호 등 품목분류가 상이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과 FTA 원산지기준도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관련 업계 등에서 의류의 품목분류를 보다 잘 이해하고, 통관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관세율표에서 의류의 품목분류 체계와 규정,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표1〉 의류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상이사례

차이점	의류의 유형	품목번호	FCN*	FAS**	
직조 방식	남성용 슈트 (양모제)	편물	6103.10-1000	7.8%	0%
		직물	6203.11-0000	11.2%	5%
의류의 종류	편물외류 (면제)	블라우스	6106.10-0000	13.0%	0%
		티셔츠	6109.10-1000	11.2%	0%
		폴오버	6110.20-0000	11.7%	5%
남성 /여성용 여부	청바지 (면제)	남성용	6203.42-1000	13.0%	0%
		여성용	6204.62-1000	12.4%	0%
섬유의 종류	직물제셔츠 (남성용)	면섬유	6205.20-0000	13.0%	5%
		재생·반합성 섬유	6205.30-2000	10.4%	0%

* FCN : 한-중 FTA 특혜관세율

** FAS :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③ 관세청 YES FTA 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 제공 FTA 활용률 참조

02

의류의 품목분류 체계

관세율표에서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원단의 직조방식에 따라 편물로 만든 것은 제61류에, 편물 이외의 직물이나 부직포 등으로 만든 것은 제62류에 분류한다.

각 류 내에서는 의류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의류의 종류를 세분하여 4단 위 호를 나누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종류의 의류는 남성용·여성용 여부에 따라서도 호를 추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6101호부터 제6108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08호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의류의 종류에 따라 제61류와 제62류에서 특게된 호가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61류에는 주로 편물로 제조하는 티셔츠, 카디건, 양말 등이 개별 호로 특게되어 있는 반면, 제62류에는 주로 직물로 제조하는 손수건, 스카프, 넥타이 등이 개별 호로 특게되어 있다.

제61류 및 제62류의 전반적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2〉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품목분류체계

제61류 편물제			제62류 非편물제	
해당품목	호		호	해당품목
오버코트, 클룩, 아노락, 스키 자켓, 윈드자켓 등	6101 6102	의류 [호가 남성/여성용 으로 구분되는 것]	6201 6202	버코트, 클룩, 아노락, 스키 자켓, 윈드자켓 등
슈트, 앙상블, 자켓, 바지, 스커트, 드레스	6103 6104		6203 6204	슈트, 앙상블, 자켓, 바지, 스커트, 드레스
셔츠, 블라우스	6105 6106		6205 6206	셔츠, 블라우스
언더팬츠, 브리프, 파자마, 목욕용 가운, 드레싱가운	6107 6108		6207 6208	언더팬츠, 브리프, 파자마, 목욕용 가운, 드레싱가운

제61류 편물제			제62류 非편물제	
해당품목	호		호	해당품목
티셔츠, 싱글리트, 기타 조끼	6109	의류 [호가 남성/여성용 으로 구분되지 않 는 것]	6209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저지, 풀오버, 카디건, 웨이스 트쿠트	6110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6111		6210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비(非)편물(59류)제 의류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6112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편물 (59류)제 의류	6113		6211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기타 의류
기타 의류	6114			
양말, 스타킹	6115	의류 부속품, 부분품	6212	브래지어, 거들, 콜셋, 브레 이스, 셔스펜더, 가아터 등 (편물제 포함)
장갑	6116		6213	손수건
			6214	쇼울, 스카프, 머플러
기타 의류부속품, 부분품	6117		6215	넥타이
			6216	장갑
		6217	기타 의류부속품, 부분품	

03

남성용과 여성용 의류의 품목분류

제61류와 제62류에 분류되는 의류는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에 따라 호 (heading)와 소호(subheading)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두 류에서 전 반부에 해당하는 제6101호부터 제6108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08호까 지는 크게 네 그룹의 의류를 남성용(또는 소년용) 또는 여성용(또는 소녀용) 인지 여부에 따라 호를 다시 구분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의 주(Notes)에서는 '남성용'과 '여성용'의류에 대 한 구분기준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남성용/여성용 의류의 구분기준(제61류 주 제9호, 제62류 주 제8호)

단계	의류의 특징		분류방법
1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으로 디자인 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재단법에 따라 분류 (전면부분 디자인 규정 비적용)
2	전면부분의 디자인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김	남성용으로 분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김	여성용으로 분류
3	남성용/여성용인지 판별불가한 경우		여성용으로 분류

〈그림 2〉 남성용 코트와 바지



〈그림 3〉 여성용 코트와 바지



04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의 품목분류

제61류와 제62류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호가 하나씩 있다. 즉, 편물로 만든 것은 제6111호에, 편물 이외의 것으로 만든 것은 제6209호에 분류한다. 제61류 주 제6호와 제62류 주 제4호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는 ‘유아용’의 범위를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물품이 이들 호와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111호와 제62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4〉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05

소매용 세트로 된 의류의 품목분류

관세율표에서 일반적인 물품들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해당하는 호로 전체 물품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파게티면(제1902호)·토마토소스(제2103호)·치즈가루(제0406호)로 구성된 스파게티 세트는 그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스파게티면이므로 제1902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에는 제61류나 제62류의 특정한 호에서 세트로 구성된 의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매용의 세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호에 함께 분류할 수 없고 각각을 분리하여 해당하는 호에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원칙이다.

제61류와 제62류에서 세트로 구성된 의류로서 하나의 호에 함께 분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슈트, 양상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이 있다. 이들을 제외한 의류들은 세트물품으로 함께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슈트(suit)의 품목분류 [제6103.1, 6104.1, 6203.1, 620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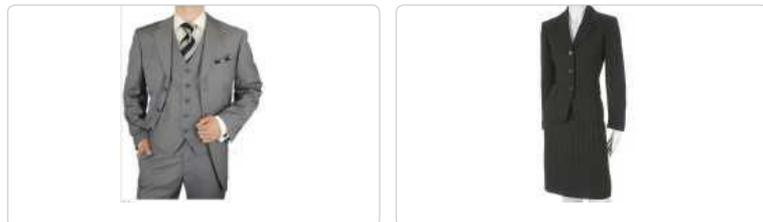
슈트란 상반신용과 하반신용의 의류를 동일한 직물로 만든 세트의류로서 신사복이나 숙녀복 정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관세율표에서 슈트는 직조방식과 남성용·여성용인지에 따라 네 개의 호에 분류된다. 제61류와 제62류 주에서 규정하는 슈트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슈트(Suit)의 분류기준(제61류 주 제3호, 제62류 주 제3호)

해당 호	제6103호(편물제, 남성용), 제6104호(편물제, 여성용), 제6203호(非편물제, 남성용), 제6204호(비편물제, 여성용)	
전체 분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부분이나 세부분으로 구성된 세트 의류 -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 색채, 조성, 스타일이 동일해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모닝드레스, 연미복(테일코트), 디너재킷슈트도 슈트에 포함 	
구성 요건	상의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트코트나 자켓 - 소매부분 이외의 겹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구성
	하의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바지, 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 - 두 가지 이상의 하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한 벌만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남성용은 긴 바지, 여성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
	[조끼 1점]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에 봉제된 조끼가 추가로 있을 수 있음 - 조끼의 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겹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

〈그림 5〉 남성용 및 여성용 슈트



나. 앙상블(ensemble)의 품목분류 [제6103.2, 6104.2, 6203.2, 6204.2호]

앙상블이란 프랑스어로 ‘조화, 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의류에서는 짝지어서 착용하도록 의도된 한 세트의 의류이다.

관세율표에서 앙상블은 슈트와 동일한 호(제6103호, 제6104호, 제6203호, 제6204호)이지만, 소호 단위에서는 슈트와 구분된다. 제61류와 제62류 주에서 규정하는 슈트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앙상블(Ensemble)의 분류기준(제61류 주 제3호, 제62류 주 제3호)

해당 호	제6103호(편물제, 남성용), 제6104호(편물제, 여성용), 제6203호(비편물제, 남성용), 제6204호(비편물제, 여성용)	
전체 분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 (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 -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 또는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않음 	
구성 요건	상의 1점	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
	하의 1-2점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 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그림 6〉 남성용 앙상블(제6203호)



〈그림 7〉 여성용 앙상블(제6204호)



다.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의 품목분류 [제6112, 6211호]

주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입는 트랙슈트, 스키슈트와 수영복은 상·하의로 구성된 경우 세트의류로서 특계된 호에 함께 분류된다.

① 트랙슈트(Track suit)

트랙슈트는 외양과 직물의 성질상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의류로서 상반신용과 하반신용 의류 한 벌로 구성된다. 트랙슈트는 관세율표 제6112호와 제6211호에 분류된다.

〈그림 8〉 편물로 만든 남성용 및 여성용 트랙슈트 (제6112호)



② 스키슈트(Ski s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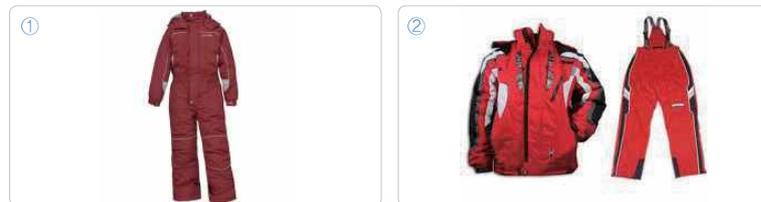
스키슈트는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 또는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 또는 세트 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상·하반신을 모두 덮도록 디자인한 ‘스키오버롤(ski overall)’과 두 부분 또는 세부분으로 구성된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이 있다.

관세율표 제61류와 제62류의 주에서는 스키슈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스키슈트의 분류기준(제61류 주 제7호, 제62류 주 제6호)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 - ‘스키오버롤(ski overall)’과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이 있음
스키오버롤 분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 -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음
스키앙상블 분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 -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스키오버롤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 - 구성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음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 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그림 9〉 직물로 만든 스키오버롤(①)과 스키앙상블(②) [제6211호]



③ 수영복 (Swimwear)

수영복은 수영을 할 때 입는 의류로서 원피스형과 투피스형의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림 10〉 편물로 만든 여성용 수영복(①,②) [제6112호]
직물로 만든 남성용 수영복(③) [제6211호]



라. 세트의류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 (WCO 결정사례)

① “샬와르-카미즈(Shalwar-Kameez)”라 불리는 여성용 의류

샬와르-카미즈는 인도지역에서 입는 전통의류로서 상의(Kameez)와 하의(Shalwar)로 구성된 의류이다. 세계관세기구(WCO)의 HS위원회(제52차, 2014년)에서 품목분류가 논의된 의류는 직물로 만든 여성용의 “샬와르-카미즈”로서 상의(블라우스), 하의(긴 바지), 솔 각 한 점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이다. 세 구성요소는 직물의 조직과 색채, 조성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스타일과 치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 벌로써 함께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의류는 전체를 세트의류인 양상블(제6204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HS 위원회는 세트로 거래되고 일반적으로 한 벌로 입는 의류라 하더라도 제62류 주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양상블의 분류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소별로 상의는 제6206호(블라우스)로, 하의는 제6204호(바지)로, 솔은 제6214호로 각각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에 구성요소별 특징과 품목분류를 정리하였다.

〈표 7〉살와르-카미즈(Shalwar-Kameez)라 불리는 여성용 의류 분류사례

구성요소	물품사진	물품설명	품목분류
상의		녹색과 노란색의 면직물을 재봉하여 만든 소매가 없는 여성용 블라우스임. 목 부분이 등글게 파진 형태로서 직물에 여러 가지 형태의 패턴이 재봉되어 장식을 이루고 있고, 가장자리에 댄 안감과 은빛 직물의 스트립이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음	6206.30
하의		면직물로 만들어진 녹색의 바지	6204.62
술		“듀파타(Dupatta)”라고 불리는 직사각형의 술(shawl)로서 녹색과 노란색의 면직물로 만들어 짐	6214.90

〈그림 11〉다양한 형태의 살와르-카미즈



② 외피와 내피 의류로 구성된 여성용 윈드 재킷

본 물품은 외피와 내피의 이중 구성으로 된 여성용 윈드 재킷으로, 외피 의류는 한면에 폴리우레탄이 도포된 나일론 직물로 만든 재킷이며, 내피 의류는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든 재킷이다. 내피 의류는 두 의류에 부착된 슬라이드파스너(지퍼)를 이용해서 외피 의류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한 벌의 의류처럼 입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내피와 외피 의류를 분리하여 따로 입을 수도 있다.

이 물품은 구성의류가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스타일과 치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지퍼로 연결하여 하나의 의류처럼 입을 수 있는 구조이고 함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이다.

이 의류는 전체를 세트의류로 보아 외피 의류가 해당하는 제6210호(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 만든 의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HS 위원회(제53차, 2014년)는 두 의류가 독립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류이므로 하나의 호에 함께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아 직물로 된 외피 재킷은 제6210호로, 편물로 된 내피 재킷은 제6102호로 각각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에 구성요소별 특징과 품목분류를 정리하였다.

〈표 8〉 외피와 내피로 구성된 여성용 윈드재킷 분류사례

구성요소	물품설명	품목분류
외피 의류	한 면이 플라스틱으로 도포된 나일론 직물로 만든 여성용 윈드 재킷임. 앞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지퍼)를 사용하여 오른쪽이 왼쪽 위로 가도록 하여 잠그며, 후드가 부착되어 있음. 의류 안쪽의 지퍼를 사용하여 내피 의류를 내부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 의류만 따로 입을 수도 있음.	6210.50
내피 의류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들어진 여성용 윈드재킷임. 지퍼를 사용하여 외피의류에 부착할 수 있으나, 이 의류만 따로 입을 수도 있음.	6102.30

〈그림 12〉 외피와 내피로 구성된 여성용 윈드재킷
(①지퍼로 외피와 내피의류를 부착한 형태 ② 외피의류 ③내피 의류)



③ 편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여성용 투피스 의류

본 물품은 합성섬유의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여성용 투피스(two-piece) 의류로서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이다. 상의는 긴 소매의 티셔츠이며, 하의는 긴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상의와 하의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직물로 만들어졌으나, 하의의 허리부분에 탄성 있는 허리밴드가 봉제되어 있다.

이 물품의 품목분류는 제6104호(여성용 양상블)나 제6112호(트랙슈트)의 세트의류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을 분리하여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HS 위원회(제56차, 2015년)는 하의의 허리부분에 다른 종류의 직물로 된 허리밴드가 있으며, 상의 의류가 제6109호의 티셔츠에 해당하므로 제61류 주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양상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6112호의 트랙슈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HS 해설서 제6112호에서 설명하는 트랙슈트의 특성(상의 소매의 끝단에 리브한 밴드 또는 탄성 밴드·지퍼 기타 조이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61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물품은 상의는 제6109호(티셔츠)로, 하의는 제6104호(긴바지)로 각각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에 구성요소별 특징과 품목분류를 정리하였다.

〈표 9〉 편물로 만든 여성용 투피스 의류 분류사례

구성요소	물품사진	물품설명	품목분류
상의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든 티셔츠로 일부분 가장자리와 소매는 감침질되어 있음. 바지 한 점과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음.	6109.90
하의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든 긴바지로, 티셔츠 한 점과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음.	6104.63

